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 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결정 카르텔과 비살균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을 폐지하고, 보험료율산출기관에 의한 보험료율 공동산출제도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며, 또한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산자부장관의 조

정명령제도를 개선하고, 건교부장관에 의한 해외 공사 수주경합의 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9년 1월 6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의 제정으로 개별법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인정된 카르텔이 폐지 또는 개선됨으로써 각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이 기대된다. 이번 에 제정된 법은 '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 案
<p>〈第1條〉 辯護士法</p> <p>第19條(報酬) 辯護士의 報酬基準은 大韓辯護士協會가 이를 정한다.</p> <p>第47條(準用規定) 第18條·第19條·第23條 내지 第27條·第29條 및 第8章의 規定은 法務法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63條(會則의 記載事項) 大韓辯護士協會의 會則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辯護士의 報酬基準에 關한 事項</p> <p>3. ~ 6. (생 략)</p>	<p>〈削 除〉</p> <p>第47條(準用規定) 第18條</p> <p>.....</p> <p>.....</p> <p>第63條(會則의 記載事項)</p> <p>.....</p> <p>.....</p> <p>1. (現行과 같음)</p> <p>〈削 除〉</p> <p>3. ~ 6. (現行과 같음)</p>
<p>〈第2條〉 行政士法</p> <p>第12條(登錄取消) 大韓行政士會는 行政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第19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委囑人으로부터</p>	<p>第12條(登錄取消)</p> <p>.....</p> <p>.....</p> <p>1. ~ 5. (現行과 같음)</p> <p>〈削 除〉</p>

現 行	改 正 案
<p><u>더</u> 金品을 받았을 때 7.·8. (생 략)</p> <p>第19條(手數料) ① 行政士는 그 業務에 관하여 委 囑人으로부터 소정의 手數料를 받는다. ② 第1項의 手數料에 관한 사항은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大韓行政士會가 이를 정한다. ③ 行政士는 그 業務에 관하여 第1項의 手數料이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委囑人으로부터 金品 을 받아서는 아니된다.</p> <p>第35條(罰則) ① (생 략)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 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囑人으로부터 <u>더</u> 金品을 받은 者 2. ~ 6. (생 략)</p> <p><第3條> 公認會計士法</p> <p>第14條(報酬) 公認會計士는 財政經濟院長官의 승인 을 얻은 金額을 超過하여 報酬를 받지 못한다.</p> <p><第4條> 稅務士法</p> <p>第15條(係爭權利의 讓受禁止 및 報酬) ① (생 략) ② 稅務士는 財政經濟院長官의 승인을 얻은 金額 을 超過하여 報酬를 받지 못한다.</p> <p><第5條> 酒稅法</p> <p>第5條(酒類製造의 免許) ①·② (생 략) ③ 濁酒(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保存이 가능한 濁酒를 제외한다)의 供給區域은 酒類製造場所在 地의 市(서울特別市와 廣域市를 포함한다)·郡의 行政區域으로 한다. 다만, 酒類供給事情과 酒類保 全상 그 供給區域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同一地方國稅廳管內에 한하여 당해 地方國稅廳長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p> <p>第45條(酒類業團體) ① ~ ③ (생 략) ④ 酒類業團體는 다음의 事業을 할 수 있다. 1. (생 략)</p>	<p>7.·8. (現行과 같음) <削 除></p> <p>第35條(罰則) ① (現行과 같음) ② <削 除></p> <p>2. ~ 6. (現行과 같음)</p> <p><削 除></p> <p>第15條(係爭權利의 讓受禁止) ① (現行과 같음) <削 除></p> <p>第5條(酒類製造의 免許) ①·② (現行과 같음) <削 除></p> <p>④ ~ ⑦ (現行과 같음)</p> <p>第45條(酒類業團體) ① ~ ③ (現行과 같음) ④ 1. (現行과 같음)</p>

現 行	改 正 案
<p>2. 酒類의 價格이나 規格의 統一 또는 檢査에 關한 事業</p> <p>3. 共同販賣에 關한 事業</p> <p>4 (생 략)</p> <p>⑤·⑥ (생 략)</p>	<p><削 除></p> <p><削 除></p> <p>4 (現行과 같음)</p> <p>⑤·⑥ (現行과 같음)</p>
<p><第6條> 關稅士法</p>	
<p>第11條(報酬) ① <u>關稅士會는 關稅士의 職務에 關한 報酬와 그 上限線(이하 “關稅士報酬基準”이라 한다)을 定하여 關稅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u></p> <p>② <u>關稅士는 關稅士報酬基準을 초과하여 報酬를 받지 못한다.</u></p> <p>③ <u>關稅士會는 關稅士報酬基準을 정함에 있어 業務別 節次의 難易, 貨物의 수량·금액 등을 參작 하여야 한다.</u></p> <p>④ <u>關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官報 또는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u></p> <p>⑤ <u>關稅士는 당해 事務所안의 보기 쉬운 곳에 關稅士報酬基準을 게시하여야 한다.</u></p> <p>⑥ (생 략)</p>	<p>第11條(報酬) <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⑥ (現行과 같음)</p>
<p>第18條(認可의 取消등) <u>關稅廳長은 關稅士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定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p> <p>1. (생 략)</p> <p>2. <u>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0條 第1項, 第11條第2項·第5項·第6項, 第12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u></p> <p>3. (생 략)</p>	<p>第18條(認可의 取消등)</p> <p>.....</p> <p>.....</p> <p>.....</p> <p>1. (現行과 같음)</p> <p>2. <u>第11條第6項</u></p> <p>.....</p> <p>3. (現行과 같음)</p>
<p>第20條(認可의 取消등) <u>關稅廳長은 通關取扱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定하여 通關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p> <p>1. <u>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0條 第1項, 第11條第2項·第5項·第6項, 第12條 내지 第14條 및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u></p> <p>2 ~ 4 (생 략)</p>	<p>第20條(認可의 取消등)</p> <p>.....</p> <p>.....</p> <p>.....</p> <p>1. <u>第11條第6項</u></p> <p>.....</p> <p>2 ~ 4 (現行과 같음)</p>

現 行	改 正 案
<p>第29條(罰則)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2 (생 략) 3. <u>第11條第2項(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報酬를 받는 者</u> 4 ~ 6. (생 략)</p> <p>第31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생 략) 2. <u>第11條第5項(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u> 3. ~ 5. (생 략) ② ~ ⑤ (생 략)</p> <p><第7條> 保險業法 第198條의2(保險料率算出機關) ① 保險事業者는 公正하고 合理的인 保險料率의 算出과 保險과 관련된 情報의 효율적인 管理·이용을 위하여 財政 經濟院長官의 認可를 받아 保險料率算出機關을 設立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保險料率算出機關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行한다. 1. 保險料率의 算出 및 檢證 2. 3. (생 략) 4. 保險料率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 5. (생 략) ④ 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事業者가 適用할 수 있는 保險料率을 算出하여 金融監督委員會에 認可를 申請할 수 있다. ⑤ 保險事業者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料 率算出機關이 認可를 받은 保險料率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第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依한 保險料 의 變更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⑦ (생 략)</p>	<p>第29條(罰則) ①·② (現行과 같음) ③ 1. 2. (現行과 같음) <削 除> 4 ~ 6. (現行과 같음)</p> <p>第31條(過怠料) ① 1. (現行과 같음) <削 除> 3. ~ 5. (現行과 같음) ② ~ ⑤ (現行과 같음)</p> <p>第198條의2(保險料率算出機關) ① <u>保險金의 지급에 相當되는 保險料(이하 “純保險 料”라 한다)를 決定하기 위한 料率(이하 “純保險 料率”이라 한다)의 公正하고 합리적인 算出과</u>..... ② (現行과 같음) ③ 1. 純保險料率 2. 3. (現行과 같음) <削 除> 5. (現行과 같음) ④ 純保險料率 ⑤ 純保險料率 保險料 (純保險料에 한한다) ⑥·⑦ (現行과 같음)</p>

現 行	改 正 案
<p>⑧ 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契約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資料를 公表할 수 있다.</p> <p>1. 保險料率算出에 관한 資料</p> <p>2. (생 략)</p> <p>⑨ 保險料率算出機關은 保險料率의 算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를 보유하고 있는 機關의 長으로부터 당해 情報를 제공받아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保險契約者에게 적용할 保險料의 算出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⑩ (생 략)</p> <p>第198條의3(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 利用者의 義務) 第198條의2第9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받은 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를 이용하여 保險料率의 算出 또는 適用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個人情報를 누설하거나 他人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目的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8條> 농수산물수출진흥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지정 생산자”라 함은 수출단지내에서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p> <p>제5조(지정품목 생산자의 지정등)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생산과 수출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단지 이외의 지역 또는 수면에서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자나 그 생산자의 단체를 지정품목의 생산자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p> <p>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그 지정의 변경, 해지의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제6조(조합의 지정등)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p>	<p>⑧</p> <p>.....</p> <p>.....</p> <p>1. 純保險料率算出</p> <p>2. (現行과 같음)</p> <p>⑨ 純保險料率</p> <p>.....</p> <p>..... 純保險料</p> <p>⑩ (現行과 같음)</p> <p>第198條의3(交通法規違反에 관한 個人情報 利用者의 義務)</p> <p>.....</p> <p>..... 純保險料率</p> <p>.....</p> <p>.....</p> <p>.....</p> <p>제2조(정의)</p> <p>.....</p> <p>1. ~ 3. (現行과 같음)</p> <p><削 除></p> <p>.....</p> <p><削 除></p> <p>.....</p> <p><削 除></p>

現 行	改 正 案
<p><u>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은 지정품목에 생산·수집·가공 또는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u></p> <p><u>② 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경이나 해지에 이를 준용한다.</u></p> <p>제7조(수집·가공업자의 지정등)</p> <p><u>① 지정품목을 수집 또는 가공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u></p> <p><u>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경이나 해지에 이를 준용한다.</u></p> <p><u>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집·가공업자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가공의 지정을 받은 조합(이하 "지정수집·가공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지정품목을 수집 또는 가공할 수 없다.</u></p> <p>제8조(수출업자의 지정등) ① 지정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u>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변경이나 해지에 이를 준용한다.</u></p> <p><u>③ 농림부장관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업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수출업자의 지정이나 그 지정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u></p> <p><u>④ 전항의 요청을 받은 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거래법 제16조제3항 및 이에 따른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p> <p><u>⑤ 전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지정을 받은 조합(이하 "지정수출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지정품목을 수출할 수 없다.</u></p> <p>제9조(지정의 신청) ① 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7조항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품목의 생산자·수집가공업자 또는 수출업자로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u>② 전항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u></p>	<p style="text-align: center;"><削 除></p> <p style="text-align: center;"><削 除></p> <p style="text-align: center;"><削 除></p>

現 行	改 正 案
<p>집·가공업자 및 지정수출업자에 대하여 지정품목의 수집·가공 또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게 하거나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5조(제수수료의 감면) 정부는 지정 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p>	〈削 除〉
<p>제16조(가공시설 임대에 관한 특례)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가공계약을 체결한 지정가공업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지정생산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지정품목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가공업자 또는 기타 관리자로서 하여금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에 의하여 당해 가공시설을 임대하고 그 자로 하여금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p>	〈削 除〉
<p>제17조(기준가격의 예시) ① 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품목의 생산비 및 판매 또는 수출이윤과 일반농산물 가격 기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품목에 대한 지정 생산자의 판매가격이나 지정수출업자의 수출가격의 기준(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수산부장관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된 기준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p> <p>③ 기준가격의 예시와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削 除〉
<p>제18조(행정명령) 농림부장관은 지정품목의 수출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1. 지정품목의 생산자에 대한 지정품목의 출하</p> <p>2. 지정수집·가공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지정품목의 매수·가공·검사 또</p>	〈削 除〉

現 行	改 正 案
<p>는 판매</p> <p>3. 지정수출업자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지정품목의 매수 또는 수출</p> <p>제32조(보고서의 제출 및 검사)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 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 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보고서등을 제출하 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생산자· 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의 시설·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하는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 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제34조(지정의 취소등) ① 농림부장관은 지정생산 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반한 때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출하가격의 협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 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 허가·면허 기타 처분권 자에게 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p> <p>제34조의2(청문) 농림부장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 수출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을 위배한 자</p> <p>제38조(과태료)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現 行	改 正 案
<p><u>료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u></p> <p><第9條> 畜産法 第40條(家畜賣買手數料) ① <u>家畜市場에서 家畜의 賣買가 成立된 때에는 家畜의 買受人은 당해 賣 買價格의 100分の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 에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長이 정하는 家畜賣買 手數料를 市場開設者에게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생 략)</p> <p>第42條(家畜市場 開設許可의 取消등) 市長·郡 守·區廳長은 市場開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家畜市場의 開設許可를 取消하거 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家畜市場의 開場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1. 2. (생 략)</p> <p>3. <u>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比率를 초과하여 家畜賣買手數料를 徵收한 때</u></p> <p><第10條> 獸醫師法 第20條(診療報酬) <u>動物病院의 診療費에 관하여 필 요한 事項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u></p> <p><第11條>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9條의2(購買對象物品의 지정) ① 中小企業廳長 은 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物品의 購買増大를 위 하여 미리 <u>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u> 物 品別로 購買對象物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小企業廳長은 <u>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u> 지정제 의를 요청한 物品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당해 物品을 購買對象物品으로 지정하여서 는 아니된다.</p> <p><u><新 設></u></p>	<p>第40條(家畜賣買手數料) ① 家畜市場에서 家畜의 賣買가 成立된 때에는 家畜의 買受人은 家畜賣買 手數料를 市場開設者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現行과 같음)</p> <p>第42條(家畜市場 開設許可의 取消등)</p> <p>.....</p> <p>.....</p> <p>.....</p> <p>1. 2. (現行과 같음)</p> <p><u><削 除></u></p> <p><u><削 除></u></p> <p>第9條의2(購買對象物品의 지정) ①</p> <p>.....</p> <p>..... <u>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公正去來委員會 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協議하여 매년</u></p> <p>.....</p> <p>.....</p> <p>② 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購買 對象物品을 지정하는 경우 第9條第1項 後段의 規 定에 의한 團體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 購買 對象物品에 관하여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p> <p>1. 1999年 : 1998년에 지정된 購買對象物品數의</p>

現 行	改 正 案
<p>② (생 략)</p> <p><第12條> 對外貿易法</p> <p>第43條(輸出入秩序維持를 위한 調整命令)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輸出入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범위안에서 貿易去來者에게 輸出 또는 輸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또는 그 對象地域 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輸出基盤의 안정, 새로운 商品의 開發 또는 海外市場의 開拓에 이바지할 것 2. 다른 貿易去來者의 權益을 부당하게 해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物品의 輸出·輸入의 秩序維持를 위한 目的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p>② (생 략)</p> <p><第13條> 鹽業組合法</p> <p>第23條(事業의 種類) ① 組合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7. (생 략) 8. 團體契約 9 ~ 13. (생 략) ②·③ (생 략) <p>第27條(團體契約) ① 組合은 組合員을 위하여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第23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團體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契約은 團體契約인을 明記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 團體契約은 組合員에 대하여 效力을 가진다. <p>第46條(決算書의 제출등) ① (생 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組合은 다음 各號의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大 	<p style="text-align: center;">100分の 80이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2000年 : 1998년에 지정된 購買對象物品數의 100分の 60이내 3. 2001年 : 1998년에 지정된 購買對象物品數의 100分の 40이내 <p>③ (現行 第2項과 같음)</p> <p>第43條(調整命令)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貿易去來者에게 輸出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또는 그 對象地域 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貿易에 관한 政府間 協定の 체결 또는 그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방산물자를 輸出하는 경우 3. 기타 物品의 輸出의 公정한 競争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對外信用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② (現行과 같음)</p> <p>第23條(事業의 種類) ①</p> <p>.....</p> <p>1. ~ 7. (現行과 같음)</p> <p><削 除></p> <p>9 ~ 13. (現行과 같음)</p> <p>②·③ (現行과 같음)</p> <p><削 除></p> <p>第46條(決算書의 제출등) ① (現行과 같음)</p> <p>②</p>

現 行	改 正 案
<p>築士事務所의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7.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報酬基準의 上한을 초과하여 報酬를 받은 때</p> <p>8. ~ 11. (생 략)</p> <p>②·③ (생 략)</p>	<p>.....</p> <p>1. ~ 6. (現行과 같음)</p> <p><削 除></p> <p>8. ~ 11. (現行과 같음)</p> <p>②·③ (現行과 같음)</p>
<p><第17條> 海外建設促進法</p>	
<p>第14條(受注競合調整)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동일한 海外工事に 대하여 2人이상의 海外建設業者 상호간의 受注競合으로 인한 受注秩序의 문란이나 對外信用의 損傷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海外建設業者に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하거나 調整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 또는 調整의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關係機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削 除></p>
<p>第15條(進出業者의 지정)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 상호간의 過當競爭의 방지 및 海外建設市場의 興件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家別 또는 地域別로 당해 國家 또는 地域에 進出할 海外建設業者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建設交通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의 건실한 경영과 海外工事の 不實遂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外建設業者를 海外工事を 都給받을 수 있는 者와 그로부터 下都給을 받을 수 있는 者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削 除></p>
<p>第24條(協會의 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p> <p>1. ~ 3. (생 략)</p> <p>4. 會員의 品位保全 및 海外建設 活動의 自律的 規制</p> <p>5. ~ 8. (생 략)</p>	<p>第24條(協會의 業務)</p> <p>.....</p> <p>1. ~ 3. (現行과 같음)</p> <p>4. 會員의 品位維持</p> <p>5. ~ 8. (現行과 같음)</p>
<p>第41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第41條(過怠料) ①</p> <p>.....</p>

現 行	改 正 案
<p>1. ~ 4 (생 략)</p> <p>5. <u>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요구하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者</u></p> <p>6. (생 략)</p> <p>② ~ ⑤ (생 략)</p> <p><第18條> 公認勞務士法</p> <p>第10條(報酬) ① <u>開業勞務士는 그 職務遂行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手數料를 받는다.</u></p> <p>② <u>開業勞務士는 의뢰받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出張 또는 事實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實費를 받을 수 있다.</u></p> <p>③ <u>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料率 및 實費의 범위 등 報酬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勞務士會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u></p> <p>第13條(금지행위) <u>開業勞務士와 그 職務補助員은 다음 各號의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u></p> <p>1. ~ 3. (생 략)</p> <p>4. <u>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 또는 實費等 報酬에 관한 기준을 초과하여 金品을 받거나 그 외에 謝禮·贈與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金品 기타 이익을 받는 行爲</u></p> <p>5. (생 략)</p> <p>第16條(登錄證등의 게시) <u>開業勞務士는 登錄證·手數料料率表 기타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그 事務所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u></p> <p>第28條(罰則) ①·② (생 략)</p> <p>③ <u>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p> <p>1. <u>第13條第4號 또는 第5號에</u> 해당하는 行위를 한 者</p> <p>2. (생 략)</p>	<p>1. ~ 4 (現行과 같음)</p> <p><u><削 除></u></p> <p>6. (現行과 같음)</p> <p>② ~ ⑤ (現行과 같음)</p> <p><u><削 除></u></p> <p>第13條(금지행위)</p> <p>1. ~ 3. (現行과 같음)</p> <p><u><削 除></u></p> <p>5. (現行과 같음)</p> <p>第16條(登錄證등의 게시) <u>登錄證</u></p> <p>.....</p> <p>第28條(罰則) ①·② (現行과 같음)</p> <p>③</p> <p>1. <u>第13條第5號</u></p> <p>.....</p> <p>2. (現行과 같음)</p>